

##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섬유, 식품, 전자업종 제조업으로 중·장년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8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을 경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 공고일 이후로부터 만40세이상 만64세이하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신규 채용한 섬유, 식품, 전자업종 기업
  - ※ '24년 12월말 대비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고용보험가입 기준)  
단. 전년도 고용유지현황을 산정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유무로 확인가능  
(예) '24년 12월말 기준 고용인원 10명 → 신청일 현재 고용인원 11명인 경우 신청가능  
(신규 채용 3명 = 대체인력 2명 + 신중년 신규채용 1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섬유, 식품, 전자업종 기업
  - 공장등록증 등록 후 3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섬유, 식품, 전자업종 기업
- 지원규모 : 15개사 정도(예산범위 내 업체선정)
- 지원한도 : 근로환경개선비 5~15백만원 차등지원

구 분	신규 고용 인원			비 고
	1인	2인	3인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10백만원	15백만원	

## 《 지원 업 종 》

### ▶ 한국표준산업분류 섬유제품/의복 제조업(C13, C14)

- C131(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C132(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C133(편조원단 제조업), C134(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C139(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C141(봉제의복 제조업), C142(모피제품 제조업), C143(편조의복 제조업), C144(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타당 하다고 인정한 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식료품/음료 제조업(C10, C11)

- C101(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2(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3(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4(동·식품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C103(과실, 채소 가공 및 전분 제품 제조업), C111(알코올 음료 제조업), C112(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타당 하다고 인정한 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자기기/전자부품/기타 전자관련 제조업(C26, C27, C28)

- C261(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C262(통신기기 제조업), C263(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C264(전자부품 제조업), C265(전기기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C101(곡물 및 전분제품 제조업) C271(반도체 제조업), C272(디스플레이 장치제조업), C273(전기 및 전자회로 부품 제조업), C279(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C281(전기 전자기기 및 전기부품 제조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타당 하다고 인정한 업종

※ 다수의 개인사업자등록 및 법인사업자(지점포함)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가능

## ○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비(작업환경개선, 개보수 등)

### <지원내용(예시)>

#### ① 근로환경개선

- 배선 및 배전함, 폐수회수배관 등 노후화로 인한 노후장비 보수
- 분진·유해물질제거시설, 고온·한냉·다습환경개선시설, 세안세척시설  
소음방지시설, 능률작업환경개선(산업용이동식에어컨, 작업의자, 작업발판,  
청소용품보관함, 적재대, 순환식보일러, LED 등 및 조명기구, 자동제단테이블 등)

#### ②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안전관리 개보수 등

※ 상기 지원내용 외 기업체측 지원금 사용계획서에 의한 협의 후 지원

## ○ 지원대상 제외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종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심사위원 다수가 우수기업 선정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기업
- 단,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경북도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지원금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금액 조정 후 후순위로 선정할 수 있음

## 2 신청방법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4. 28.(월) ~ 2025. 5. 30.(금)

○ 신청방법 : E-Mail([job@gepa.kr](mailto:job@gepa.kr))

※ 반드시 공문 접수, 제출 후 유선으로 확인

○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054-470-8553, 8581)

• (주소)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공문포함) 및 사업계획서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2부(2024년말 기준 1부, 신청일 현재기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23년, 2024년)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각1부)
- 시설공사 견적서(10백만원 이상인 시설공사의 경우는 원가계산서 제출)

### 3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 선정방법

- (1차) 정량적평가(성장성, 안정성, 종업원 수, 매출액 등) 및 현장실사
- (2차) 심사위원을 통한 정성적 서면평가
  - ※ 선정기준(100점) : 정량평가(40점)+정성평가(60점)
-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평가분야	정량적 평가(40점)	정성적 평가(60점)
평가자	• 사업 담당자	• 평가 심의위원회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성(10점)</li> <li>• 안정성(10점)</li> <li>• 종업원 수(10점)</li> <li>• 매출액(5점)</li> <li>• 공장설립기간 (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15점)</li> <li>• 사업의 실현가능성(15점)</li> <li>• 신규채용 신중년 근로자 유지 방안(15점)</li> <li>• 향후 신중년 채용계획(15점)</li> </ul>

- 선정기준 : 정성적평가 점수와 각 심사위원의 정량적평가 평균점수 합계가 60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업체선정
- 선정발표 : 선정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4 기타 유의사항

- 선정평가 관련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심사기준 미 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은 결과보고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 근로환경개선으로 지원된 시설 등은 향후 3년간 보존 및 타인 양도 금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 ☎ 054-470-8553, 054-470-8581)으로 문의 바람

- 붙임 : 1. 사업신청서 1부.  
2. 신청기업 확인서  
3. 사업계획서(서식 1)  
4. 결과보고서(서식 2) \* 사업완료 후 제출  
5. 협약서(서식3)  
6.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서식4)